

1.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
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의 전국 호환성 확보를 위해 단말기 인증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, 전국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자동지불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제도의 유지 필요성이 낮아 이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1025호

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
시행요령 폐지 고시안

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